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

발의연월일 : 2026. 10. 21.

발 의 자 : 백선아, 이진환, 한근수, 홍성우, 유수형, 손정자

1. 제안 이유

현행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는 창업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사용료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정비함(안 제6조).

나.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사유를 신설함 (안 제9조제3항).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입주자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사용료 반환 절차·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제4항).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집행기관 작성**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자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절차, 금액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주승인의 취소) ① (생 략)	제6조(입주승인의 취소)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사용료 등) ①·② (생 략)	제9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자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전 퇴거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절차, 금액 등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 임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해당 없음

○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입주 청년이 납부하였던 사용료를 반환하는 내용 규정이므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청년담당관 이윤희

붙 임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